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2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윤종군·진선미·홍기원

김병기 • 복기왕 • 민홍철

위성곤 • 김우영 • 김주영

이춘석 • 윤호중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·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·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고,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 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.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·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「주거기본법」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 표가 설정·공고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

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, 유도주거기준의 설정·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·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제5조제1항제8호 삭제,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, 제19조제1항, 제19조제4항신설).

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3항 중 "하며, 사회적·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"를 "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·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·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 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공고할 수 있다"를 "공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 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도주거기준 설정·공고에 관한 경과조치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·공고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	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			
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				
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				
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			
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				
(이하 "주거종합계획"이라 한				
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	
8.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	<u><삭 제></u>			
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				
기준에 관한 사항				
9. • 10. (생 략)	9. • 10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			
제17조(최저주거기준의 설정) ①	제17조(최저주거기준의 설정) ①			
• ② (생 략)	• ② (현행과 같음)			
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,	3			
용도별 방의 개수, 주택의 구조				
·설비·성능 및 환경요소 등	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				
포함되어야 <u>하며, 사회적·경제</u>	<u>한다</u> .			
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				
<u>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</u> .				
<u><신 설></u>	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・			

<신 설>

제19조(유도주거기준의 설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 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・ 공고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 <신 설>

가구특	성 및	소	득수준	의	변화
등 시	-회적 •	경:	제적인	ċ	건의
변화에	따라	ユ	적정성	0]	유지
되어야	: 한다.				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 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 여야 한다.

제19조(유도주거기준의 설정) ①

공고하여야 한다.

- ②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 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 여야 한다.